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김태호·백종헌·박대출

김성원 • 박정하 • 강민국

박충권 · 김위상 · 임이자

곽규태 • 윤영석 • 김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 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 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 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 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km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市·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란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별표 2 중 울산지방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지방법원란 및 창원지방법원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울 산	울산광역시
-----	-------

창 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70° TE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의령군
	통 영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밀 양	밀양시·창녕군
	거 창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진 주	진주시 ·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양 산	양산시

별표 5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가정법원 및 창원가정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울 산 울산광역시	
-----------	--

창 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경상남도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의령군
	통 영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밀 양	밀양시 • 창녕군
	거 창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진 주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양 산	양산시

별표 7 중 울산지방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 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울산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

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